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nkhwang@korea.kr
- 팩스 : 044-201-678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전자우편 nkhwa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85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제4조 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 ~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1. 수립 근거 및 목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들에 대한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을 약 30억 8,226만톤으로 설정

나.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100분의 10을 유상으로 할당하되, 무역집약도 및 비용발생도를 고려하여 일부 업종(69개 중 28개)에 대해서는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

다. 배출권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을 고려하여 전환부문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수준을 점진적으로 강화

라. 배출권시장의 시장기능 제고를 위하여 금융기관 및 증권사 등의 배출권시장에 참여·거래를 허용

3. 기타 사항

수립·확정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전체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게시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00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